성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,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한 중앙정부(전 행정자치부)의 정책을 반영코자 하여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의료업무수당 인상(조례 제2조 제1호)

<단위 : 원>

구 분	전문의		일반의	
	인상 전	인상 후	인상 전	인상 후
을지(성주군)	월 695,000원이하	월 995,000원이하	월 614,000이하	월 914,000원이하

3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령 :「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」
경상북도 총무 12151-11236호(2003.6.17.)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1).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3) 기 타 : 도내 시군별 현황 1부.

4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08.8.20~2008.9.17(28일)
- 예고방법 : 성주군공보, 군홈페이지, 군.읍.면 게시판
- 예고결과 : 의견제출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[별표1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

(월지급액 단위 : 원)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을 지(성주군)	월 995,000원 이하	월 914,000원 이하

비고 1. 전문의는「의료법」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「의료법」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한다.

2. 보건소장이 원폭피해자진료소 소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,000원 이하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(안)</th></tr>
<tr><td>【별표1】

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전 문 의</th><th>일 반 의</th></tr>
<tr><td>을지
(성주군)</td><td>월 695,000원
이하</td><td>월 614,000원
이하</td></tr>
</table></td><td>【별표1】

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전 문 의</th><th>일 반 의</th></tr>
<tr><td>을지
(성주군)</td><td>월 995,000원
이하</td><td>월 914,000원
이하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